

의안
번호

378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기 획 위 원 회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24. 11. 21.

전문위원 김 동 성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나. 의안번호 : 제378호
- 다. 제출일자 : 2024. 11. 7.
- 라. 회부일자 : 2024. 11. 15.

2. 제안이유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4년도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금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당초 예상보다 2024년 생활체육 대회 개최 실적이 증가하여 생활체육 육성 지원 항목을 증액 편성, 당초 2024년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 1)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4조
- 2) 설치목적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 3) 설치연도 : 2003. 3. 17.(「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통합제정 2006. 5. 30. 조례 제655호)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가)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지원
- 나)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및 국·내외 체육교류 활성화 지원
- 다)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경비 지원 등

다.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 1)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 2) 소규모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지원

라. 연도별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기타수입	16,795	0	0	187,344	224,824
이자수입	10,060	8,137	9,087	2,526	3,832
전 입 금	330,000	200,000	300,000	200,000	150,000
계	356,855	208,137	309,087	389,870	378,656

마. 2024년도 기금사업 주요 변경개요

1) 기금변경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	변경예산	증감액
기금규모(수입.지출)	491,777	686,559	194,782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수입계획 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491,777	686,559	194,782	
기타수입 (경륜경정)	0	218,911	218,911	(증)경륜경정 수입금 배분금
이자수입	8,886	8,886	0	
예치금회수	152,891	128,762	-24,129	(감)2023결산에 따른 잔액
전입금	330,000	330,000	0	

- 2024년도 경륜·경정장 수익금 배분금 218,911천원 증액 편성
-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2023년도 예치금 회수 금액을 152,891천원으로 예상했으나 2023년 사업비 지출이 예상보다 커져서 결산 후 예치금 회수(사업비 잔액) 금액을 24,129천원 감액 편성

○ 지출계획 변경

(단위 : 천원)

구 분	기정예산(A)	변경예산(B)	증감액(B-A)	증감내용
계	491,777	686,559	194,782	
생활체육육성지원	476,800	548,295	71,495	(증)대회개최 및 출전 증가에 따른 지출금액 증액
예치금	14,977	138,264	123,287	(증)사업비잔액 증액

- 당초 예상보다 대회 개최 및 대회 출전이 증가해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항목 71,495천원 증액 편성
- 내년도 예치금 항목 123,287천원 증액 편성

4. 참고사항

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A)	전입금	이 자 수 입	기타	계(B)	비용자성 사업비	인력운영비 및기본경비	
2019년	378,656	150,000	3,832	224,824	380,264	380,264	0	△1,608
2020년	389,871	200,000	2,526	187,344	135,861	135,861	0	254,010
2021년	309,087	300,000	9,087	0	223,731	223,731	0	85,356
2022년	208,137	200,000	8,137	0	441,220	441,220	0	△233,083
2023년	356,855	330,000	10,060	16,795	494,920	494,920	0	△138,065
계	1,642,606	1,180,000	33,642	428,963	1,675,996	1,675,996	0	△33,390

나. 2023년도 성북구체육진흥기금 결산내역

(단위 : 원)

예산 과목			지 출 계획액	지출액
합 계			600,711,000	623,682,879
생활체육 육성지원	일반운영비(201)	사무관리비	5,000,000	0
		행사운영비	5,000,000	0
	민간이전(307)	민간경상사업보조	442,600,000	494,920,000
	시설비및부대비(401)	시설비	25,000,000	0
	민간자본이전(402)	민간자본보조	2,000,000	0
보전재원	예치금(602)	예치금	121,111,000	128,762,879

5. 검토의견

□ 개요

- 본 변경안은 2024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경정 수익금 배분금과 2024년 생활체육 대회 개최 실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2024년 수입·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4조¹⁾에 따라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4조(체육진흥기금)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 체육 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12.31.)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12.31.)

1.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사업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에 따 른 수입금 (개정 2016.12.29, 2020.12.31.)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12.31.)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20.12.31 , 2023. 7.13)

③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체육관,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설치

2.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20.12.31.)

3.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개정 2020.12.31.)

4.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관련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20.12.31.)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개정 2020.12.31.)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지방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설치한 기금임.

□ 주요내용

-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 계획 중 2024년 경륜·경정 수입금 배분금 기타 수입 2억 1,891만원과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수금 감소분 2,412만원을 수입에 반영하고,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 중 대회개최 및 출전 증가에 따른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비 증액분 7,149만원과 예치금 1억 2,328만원을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 중 정책사업인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비(13%, 7,149만원)와 일반예치금(89.14%, 1억 2,328만원)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28.3%인 1억 9,478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²⁾에 따르면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임.
-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4조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같이 수입·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됨.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